

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21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5월 2일  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징계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의 사유와 절차·효력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출석정지 징계 근거를 관계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출석정지 징계 근거를 “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」”에서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”로 수정함(안 제6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원안과 같음.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”로 한다.  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신 설>

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